



의과대학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 제출안내

1. 관련: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
2.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학위논문 심사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 출산은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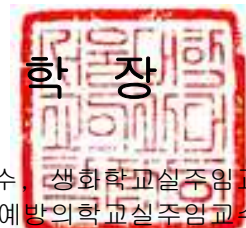
3) 제출기한: 2019. 12. 27.(금)

4)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붙임 참조]	공통서류
2	지도교수 추천서[붙임 참조]	
3	병적증명서	해당자 제출
4	출생증명서[자녀]	

붙임: 신청서류(연장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끝.

서울대학교의과대학장



수신자 중개의학전공주임교수, 해부학교실주임교수, 생리학교실주임교수, 생화학교실주임교수, 병리학교실주임교수, 약리학교실주임교수, 미생물학교실주임교수, 예방의학교실주임교수, 열대의학교실주임교수, 기생충학교실주임교수, 인문의학교실주임교수, 법의학교실주임교수, 의료관리학교실주임교수, 의공학교실주임교수,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외과학교실주임교수, 산부인과학교실주임교수, 소아과학교실주임교수, 정신과학교실주임교수, 신경과학교실주임교수, 피부과학교실주임교수, 정형외과학교실주임교수, 흉부외과학교실주임교수, 신경외과학교실주임교수, 비뇨의학교실주임교수, 비뇨기과학교실주임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주임교수, 안과학교실주임교수, 영상의학교실주임교수, 마취통증의학교실주임교수, 성형외과학교실주임교수, 방사선종양학교실주임교수, 검사의학교실주임교수, 재활의학교실주임교수, 핵의학교실주임교수, 가정의학교실주임교수, 응급의학교실주임교수,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임상약리학교실주임교수, 서울대학교대학원의과학과장, 임상의과학과장, 중앙생물학전공주임교수, 임상약리학전공주임교수, 방사선응용생명과학전공주임교수, 협동과정의료정보학전공주임, 협동과정줄기세포생물학전공주임

실무관 **함형주**

담당관 **조재광**

전결 12/04
교무부학장 **김종일**

협조자

시행 의과대학-29499 (2019. 12. 05.)

접수

우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전화 02-740-8033

전송 02-763-0962

/hamhj2314@snu.ac.kr

/ 공개